



(:
[2017.6.3.] [28080 , 2017.5.29.,]

() 044 - 200 - 5852, 5851
(-) 044 - 200 - 5780, 5777

1 () 「 」

2 (가) 「 」 (" ") 5
8 " " . <

[2008.2.29.>](#)

1. 5 3 6 . 3 1 6

2. . 5 1 가
(" 가 ") 5 5 (" ")
)

5 8 1
. < [2008.2.29., 2013.3.23.>](#)

1. 가 : 5 1 5 2

2. : 5 6 가

3 () 5 9

- 1.
2. .
- 3.
- 4.
5. . .
6. .
7. .
- 8.

5 9
. < [2008.2.29., 2017.5.29.>](#)

가 . <

[2008.2.29., 2017.5.29.>](#)

4 (.) 6 1 2
. < [2008.2.29., 2013.3.23.>](#)

1. ,
- 2.
- 1
1. 1 : 가

-
- 2. 2 : 가 가
 - 3. 3 : 가

. < 2008.2.29., 2013.3.23. >

5 (가) 10 4 " . < 2008.2.29., 2013.3.23. >

- 1. 「 」 36
- 2. 3 1
- 3. 가 가
- 4. 가 10 (" ") 가

6 () 13 1 5 , 6 가

- 1. 1 11 1 3 :
- 2. 3 11 1 3 :
- 3. 13 3 11 1 3 :
- 4. 3 , . ,
- 5. 11 1 2 :
- 6. 11 1 2 :

5

- 1. 13 2 가 : 3
- 2. : 5

3 .< 2008.2.29., 2013.3.23.>

7 () 20 3

.< 2008.2.29., 2013.3.23., 2017.5.29.>

- 1. 가 가
- 2. .
- 3. 9 가 가 .

20 3

.< 2008.2.29., 2013.3.23.,

2017.5.29.>

- 1. 가
- 2. ,
- 3. 가 가

1 2

()

.< 2008.2.29., 2013.3.23., 2017.5.29.>

8 (가) 24 1 가 가
「 」 37 가 .< 2008.2.29., 2013.3.23.>

9 () 26 2 가
「 」 38 .< 2008.2.29., 2013.3.23., 2015.6.9.>

10 () 28 1
5
28 2
26 1 2 가
.< 2008.2.29., 2013.3.23.>

2

3

.< 2008.2.29., 2013.3.23.>

2

.< 2008.2.29., 2013.3.23.>

11 () 33 1 3 33 2

가

1

- 1. 가
- 2. 가

15 ()

44

. <

[2008.2.29.](#), [2010.8.11.](#), [2013.3.23.](#), [2014.11.19.](#), [2017.5.29.](#) >

1. 6 6

2. 7 2

3. 7 4

4. 10 3 4 가

5. 11 1 2

6. 12 1 3 ,

7. 13 2

8. 16 1 2

9. 16 3 가 가

10. 19 1 3 . . .

11. 19 4 5 . .

12. 19 6 . .

13. 19 7 8 . .

14. 19 9 10 , .

15. 20 3 .

16. 21 1 2 ,

17. 23 2

18. 23 4

19. 24 1 3 가, 가 ,

가 가

20. 25 3 4 , 가 가

21. 26 , 가

22. 27

23. 28 2

23 2. 31 3 5 . ,

24. 32

25. 35 2 .

26. 37

27. 41 1

28. 41 2 3 ,

29. 41 5

30. 41 6

30 2. 42 2

31. 52 .

16 () 52 1 2 .

[[2011.4.4.](#)]

< 20586 ,2008.1.31.>
2008 2 4 .

< 20722 ,2008.2.29.> ()
1 () . , 6

2 5

6 () ㉓

㉔

2 2 2 , 4 1 . 3 , 5 4 , 7 1 . 2
. 3 , 8 , 9 , 10 2 . 3 , 11 3 , 12 2 , 13 ,
15 , 16 1 16 2 . 3 " " "

" 12 1 " " " " .

6 4 , 10 4 16 4 " " " " .

12 1 " " " 가 " .

2 1 2 " " " " .

3 2 . 3 15 " " " " .

㉕ <138>

< 21556 ,2009.6.25.>

< 22075 ,2010.3.15.> ()

1 () 2010 3 19 . < >

2 () ㉖

㉗

12 1 " 가 " " " .

㉘ <187>

< 22330 ,2010.8.11.>

< 22829 ,2011.4.4.>()

1 ()

2 (「 」) 「 」 119 1 4

가

3 (「 」 가) 「

」 27 3

가

4 ()

< 24443 ,2013.3.23.>()

1 () . < >

2 5

6 () <109>

<110>

2 2 2 , 4 1 , 3 , 5 4 , 7 1 ,

2 , 3 , 8 , 9 , 10 2 • 3 , 11 3 , 12 2 , 13

, 14 2 5 15 " " " "

6 4 10 4 " " " "

12 1 " " " "

<111> <146>

< 25751 ,2014.11.19.>()

1 () , 5

2 4

5 () <379>

<380>

12 1 " , " " , "

15 11 " " " "

<381> <418>

< 26310 ,2015.6.9.>

< 28080 ,2017.5.29.>

2017 6 3

[별표 1]

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(제14조 관련)

구분	지정요건
시설 기준	가.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.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
교수 자격 및 인원	가. 교수요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. 교육기관당 가목의 요건을 갖춘 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호	25	50	100
나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호	25	50	100
다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	법 제52조제1항제	25	50	100

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3호			
라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4호	25	50	100
마.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를 하지 않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5호	40	80	150
바.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6호	25	50	100
사.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7호	40	80	150
아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8호	20	40	80
자.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9호	20	40	80
차.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않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0호	20	40	80
카.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1호	25	50	100
타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2호	50	100	200
파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3호	25	50	100
하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4호	25	50	100
거.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5호	25	50	100
너.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	법 제52조제1항제	25	50	100

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16호			
더.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7호	25	50	100
러.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8호	20	40	80
머.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9호	25	50	100
버.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0호	50	100	200
서. 법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1호	40	80	150
어.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2호	40	80	150
저.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3호	40	80	150
처.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4호	50	100	200
커.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5호	20	40	80
터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26호	25	50	100